

부산광역시사하구(해수욕장)공중탈의장설치및사용조례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29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1999. 6. 29.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제안이유

부산광역시사하구(해수욕장)공중탈의장설치및사용조례가 부산광역시사하구 공설해수욕장조례와 내용이 중복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민들에게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부산광역시사하구공설해수욕장조례 제3조 점용허가에 탈의장을 설치·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제5조 점용허가 제한에 공익 및 양속저해와 해수욕객에 불편과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점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주민들에게 불합리한 규정 삭제

부산광역시사하구(해수욕장)공중탈의장설치및사용조례폐지조례안

부산광역시사하구(해수욕장)공중탈의장설치및사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